

보 고 사 항

□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

1.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
3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4.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장권의 건
5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6. 기타 일반안건

□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

○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— 2002. 4. 16

(화순군의회 공고 제2002 - 3호)

<공고내용>

- 집회일시 : 2002. 4. 22 (월) 10:00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각종 의안 제출상황 보고

○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

□ 발의일자 : 2002. 4.

□ 발 의 자 : 군 수

□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 예산편성 규모

구 분	추경예산 예산안 참조	기정예산	증감	비고
계				
일반회계				
특별회계				

○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: 별첨

※ 2002. 4.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회부

○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

□ 발의일자 : 2002. 4. 17

□ 발 의 자 : 군 수

□ 제안이유

○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통리사의 운영비(보일러운영비,전기요금,전화요금,수도요금)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○ 상수도 정수장 관리자(3급관사)의 보일러운영비, 전기요금, 전화요금, 수도요금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6조)

※2002. 4. 18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온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

□ 발의일자 : 2002. 4. 17

□ 발 의 자 : 군 수

□ 제안이유

○ 공동급수권자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공동급수 할 수 있는 능력, 역할이 미비하여 공동급수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함.

○ 급수공사 신청, 승인을 군수에게 득 하도록 하는 등 온천수 공급에 따른 행정절차가 제약이 됨.

○ 온천수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적격 업체 등의 시공으로 부실, 하자공사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급수공사 자격을 명시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온천공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급수시설을 갖춘 단체,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동급수권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온천공소유자등 자본이 열악하여 공동급수 추진이 어려움을 감안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권자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3조1항)

○ 이용 허가자는 온천수 급수공사를 공동급수권자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공동급수권자 책임 하에 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함 도모 (안 제 9조1항)

○ 온천수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화순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체로 명시함.(안 제9조 2항)

※2002. 4. 18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건

□ 발의일자 : 2002. 4. 18

□ 발 의 자 :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
 -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
 -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
법 개선(연가수혜 범위 확대)

□ 주요골자

- 별첨(조례안 참조)

※ 2002. 4. 1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수리계조례안 건

□ 발의일자 : 2002. 4. 18

□ 발 의 자 :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수리계의 조직, 운영에 관한 관계법(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)개정
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시장,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조례를 제정코
지함.

□ 주요골자

- 별첨(조례안 참조)

※ 2002. 4. 19 산업·건설위원회 심사회부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

□ 발의일자 : 2002. 4. 18

□ 발 의 자 :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도로안진관리사업소 역청공장 부지인 화순읍 서대리 1022 -30번지의
16필지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2002.5.8일 제4차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는
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에 반영 매입코사함.

주요내용

가. 취득계획 대상토지

구분	수량	소요예산액 (천원)	비고
계		1,454,206	
토지	17필지 (61,298㎡)	1,454,206	
건물	4동		
기타	3건		

나. 추진기간 : 2002년 5월 ~ 2002.12월(8개월간)

취득사유

○ 도유재산인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역칭공장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사용
계획은 주후 군의회와 협의

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제78조
-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※ 2002. 4. 1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전남생물농업 연구센터 건립·운영 협약 체결안 건

발의일자 : 2002. 4. 18

발 의 자 : 군 수

제안이유

○ 지역산위 진흥을 위한 생물산업 연구센터의 건립(운영) 사업을 추진하기
위하여 전라남도과 우리군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함.

주요내용

○ 별첨(조례안 참조)

협약서 (별첨참조)

※ 2002. 4. 19 산업·건설위원회 심사회부

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

○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2. 3. 25 이송

- 공포일자 : 2002. 4. 4
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21호

○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2. 3. 25 이송

- 공포일자 : 2002. 4. 4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20호

○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2. 3. 25 이송

- 공포일자 : 2002. 4. 12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24호

○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2. 3. 25 이송

- 공포일자 : 2002. 4. 12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25호

○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2. 3. 25 이송

- 공포일자 : 2002. 4. 12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22호

○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2. 3. 25 이송

- 공포일자 : 2002. 4. 12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23호

□각종 의안 세안상황 보고

○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— 2002. 4. 16 의원발의

- 발의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4인
- 회 기 : 2002. 4. 22 ~ 4. 29 (8일간)

○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— 2002. 4. 16 의원발의

- 발의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4인
- 출석요구내용 : 별 첨